의 안 번 호

2133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. 8. 25.(금) 홍영진 의원 외 9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8. 25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9. 6.(수)

2. 제안이유

○ 울산광역시 중구에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청년문화 특화 지역으로 육성·개발하고 이를 통해 청년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의(안 제2조)
- 나.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안 제5조)
- 다.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13조)
- 라. 시범지역의 선정(안 제23조)
- 마. 특화지역 지정 등(안 제24조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청년기본법」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나. 「청년기본법」제23조(청년 문화활동 지원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청년문화 특화지역으로 육성·개발하고 이를 통해 청년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청년기본법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청년 문화활동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